##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99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윤후덕·정진욱·민형배

오세희 • 허성무 • 강준현

윤건영 • 이훈기 • 박홍배

복기왕 · 임호선 · 김정호

정준호 · 임오경 · 강득구

안규백 · 홍기원 · 김성회

김준형 · 임미애 · 김주영

이광희 · 김문수 · 서미화

박 정 • 조계원 • 김병주

이병진 • 정춘생 • 문금주

최기상 • 이해식 • 한정애

김영배·차지호·소병훈

남인순 • 이소영 • 김남희

맹성규 · 정성호 · 어기구

전진숙 · 안태준 · 김용만

이재정 • 이연희 • 김윤덕

강훈식 • 부승찬 • 위성락

이재명 의원(5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 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 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제4항 중 "성실히"를 "자료의 공개·열람·이관, 관계 기관과해당 국가 또는 제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하여 성실히"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피해진상 재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제25조에 따른 피해판정 불능결정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 2.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가가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	
사기간 등) ① ~ ④ (생 략)	사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	
	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	
	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	
	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	
	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	<b>4</b>	
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		
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		
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u>성실히</u> 교섭하	<u>자료의 공개·</u>	
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	열람ㆍ이관, 관계 기관과 해당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제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⑤ · ⑥ (생 략) <신 설>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 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u><신</u> 설>

<신 설>

피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
지조사에 관하여 성실히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피해진상 재조사) 혀	행정
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sup>□</sup>	<u>다른</u>
각하 결정, 제24조에 따른 <i>7</i>	
결정 및 제25조에 따른 피형	
정 불능결정 이후 제19조제	
에 따라 새로운 자료를 확!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성	
사 신청인의 신청에 따르기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현행과 같음)	Œ.
②	
<u></u>	
	_ フト
* 이 시1. 된11세 케다된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0
	<u>180</u>
<u>일</u>	
,	- ·
1.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축	<u>후에</u>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	
2. 제19조제5항에 따라 국기	가가

##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